

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**[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(관세 대응 수출바우처)]**

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장벽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(관세 대응 수출바우처)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2일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1. 모집개요

사업목적

-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위기 대응 긴급 지원

모집규모 : 약 ○○○개사

모집대상 :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

주무부처/운영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/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
사업기간 : 2025. 4. 1 ~ 2026. 1. 31 (10개월)

단, 모든 서비스는 2025년 11월 15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.

*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), 2)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
- 1) 2025년 11월 15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"정산 요청" 등록
- 2) (해당시) 총괄수행기관에서 별도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

*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나,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

□ 사업내용

-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*를 발급하고,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
* 수출바우처는 '국고 보조금 + 기업 부담금'으로 구성



- 국내외 컨설팅사, 물류법인 등과 연계하여 ①피해분석, ②피해대응, ③생산거점 이전, ④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는 “관세대응 패키지” 서비스 신규 도입

<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>

| 구 분 | 주요 서비스 내용 |
|-----------|--|
| ①피해분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 전문가(관세·법무 등) 연계 미/캐/멕/중국 등 관세정책 피해 분석 컨설팅 - 해외 전문가(관세·법무 등) 연계 관세피해 대응 및 해결 전략 컨설팅 - 해외 전문가(관세·법무 등) 연계 원산지 증명 컨설팅 |
| ②피해대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간재 품목 및 지역별 조달 다변화 컨설팅 - 해외 생산 파트너(OEM) 발굴 조사 (미국, 아세안 등) - 해외현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 컨설팅 - 국제운송 물류비 절감 컨설팅 및 국제운송 운임 지원 |
| ③생산거점 이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산거점 청산관련 현지 세무·회계 지원 - 해외 전문 조사기관 연계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추천 및 시장 분석 - 해외 부동산 전문기관(Site Selector) 활용 생산거점 후보지 방문 지원 - 현지법 근거 행정 대행 및 간소화 지원 등 |
| ④대체시장 발굴*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, 바이어 발굴 서비스 -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·행사·해외영업지원 서비스 -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및 특허·지재권 취득 지원 서비스 |

* 미국 외 수출지역 발굴을 위한 서비스 (미국 개최 해외전시회, 미 수출 관련 인증, 특허 등 제외)

○ 참여기업 필수과업

- 동 사업 참여기업은 “관세대응 패키지”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50% 이상 사용 의무
- 필수과업 사용 외 잔액은 수출바우처 일반 14대 메뉴에 사용 가능

2. 지원요건 및 내용

□ 지원요건(공통)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,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中
 - '22~'24년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또는
 - '22~'24년 對캐나다, 멕시코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
 - '22~'24년 중국, 캐나다, 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

신청 제외 대상

- ◆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◆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◆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- ◆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
 - *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(제재조치) 제1항의 참여제한 열거 사유
- ◆ 산업부, 중기부,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의 참여 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5.4.1.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(이하 '참여기업')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
- ◆ '25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,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,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(이하 '수행기관')
 - * 즉, 참여기업,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,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
 - *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(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.exportvoucher.com 참조)
- ◆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◆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| 업종 분류 | 품목코드 | 지원제외 업종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조업 | 33402中 |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|
| | 33409中 |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5621 | 주점업 |
|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| 5821中 |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|
|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9124 | 갬블링 및 베팅업 |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◆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

◆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※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,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
□ 지원요건 및 바우처 발급액

| 세부산업 | 단계별 지원요건 | 바우처 발급한도* |
|----------|---|---|
| 소재·부품·장비 | [진입] '22-'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| [진입] 2,000만원 ~ 6,000만원 |
| 그린 | [성장] '22-'24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| [성장] 2,000만원 ~ 8,400만원 [확장] 2,000만원 ~ 12,000만원 |
| 소비재 | [확장] '22-'24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| [진입] 2,000만원 ~ 3,600만원 [성장] 2,000만원 ~ 6,000만원 [확장] 2,000만원 ~ 6,600만원 |

* 국고보조율 : 중소 70%, 중견 50%

* 단계별 바우처 발급 한도 범위 내에서 1천만원 단위로 선택

○ 바우처 발급액 별 국고보조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예시

| 바우처 발급액 | 중소기업 (국고보조율 70%) | | 중견기업 (국고보조율 50%)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| 국고보조금 | 기업분담금 | 국고보조금 | 기업분담금 |
| 2,000만원 | 1,400만원 | 600만원 | 1,000만원 | 1,000만원 |
| 3,000만원 | 2,100만원 | 900만원 | 1,500만원 | 1,500만원 |
| 3,600만원 | 2,520만원 | 1,080만원 | 1,800만원 | 1,800만원 |
| 4,000만원 | 2,800만원 | 1,200만원 | 2,000만원 | 2,000만원 |
| 6,000만원 | 4,200만원 | 1,800만원 | 3,000만원 | 3,000만원 |
| 6,600만원 | 4,620만원 | 1,980만원 | 3,300만원 | 3,300만원 |
| 8,000만원 | 5,600만원 | 2,400만원 | 4,000만원 | 4,000만원 |
| 8,400만원 | 5,880만원 | 2,520만원 | 4,200만원 | 4,200만원 |
| 1억원 | 7,000만원 | 3,000만원 | 5,000만원 | 5,000만원 |
| 1.2억원 | 8,400만원 | 3,600만원 | 6,000만원 | 6,000만원 |

* 운영기관의 예산 여건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초 발급 이후 바우처 증액 또는 감액 가능

3. 참여기업 신청방법

□ 신청처 :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

□ 신청기간 : '25. 4. 2.(수) ~ '25. 4. 15.(화) 18시 까지

□ 신청방법

- ① 홈페이지 접속(www.exportvoucher.com) , 산업 및 차수(2차) 선택
- ② 신청기업의 매출 규모(진입/성장/확장)에 따라 세부 트랙 선택
- ③ 바우처 발급액 선택 및 사업 신청서, 필수 서류, 가점 서류 등 첨부
- ④ 저장 및 제출완료

· 사업 신청 시 **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**
 *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불가
 · 인증서 발급 기관 :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, 한국정보인증, 코스콤
 · 온라인 발급시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

□ 신청시 구비 서류

| 구분 | 연번 | 제출서류 | 발급방법 |
|----|----|--|--|
| 필수 | 1 | 사업계획서 | 홈페이지 內 작성(별도 제출 불요) |
| | 2 |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| 홈페이지 內 내용 확인, 전자서명 첨부(별도 제출 불요) |
| | 3 | 사업자 등록증명 |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안내한 플랫폼* 활용 * 신청서류 발급과 제출을 한 곳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한 시스템 |
| | 4 | 표준재무제표증명원 (기업별 최신 3개년) | |
| | 5 | 4대보험 가입자 명부(최신 년도) | |
| | 6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(법인 및 개인사업자) | |
| | 7 | 중소기업확인서 / 중견기업확인서 |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, 중견기업정보마당(mme.or.kr) 확인서 발급 |
| | 8 | 회사소개서 및 제품/기술 카탈로그 (혹은 브로슈어) | 국문 제출 |
| 선택 | 9 | (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) 한국본사-해외법인(생산거점) 관계 증명서류 |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※ 생산거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|
| | 10 | (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일 시) 해외거점-대미 수출 증빙서류 | 생산거점 소재국 정부 발행 '22년~'24년 수출액 증명서류 ※ 대미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|
| | 11 | 기타 우대조건(가점)별 관련 증빙 |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확보, 제출 * 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및 참가신청 화면 참고 |

* (전항목 해당)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, 발급 2년 이내 서류만 인정

* 상기 필수서류 및 운영기관 요청 서류가 기한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

4.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

□ 평가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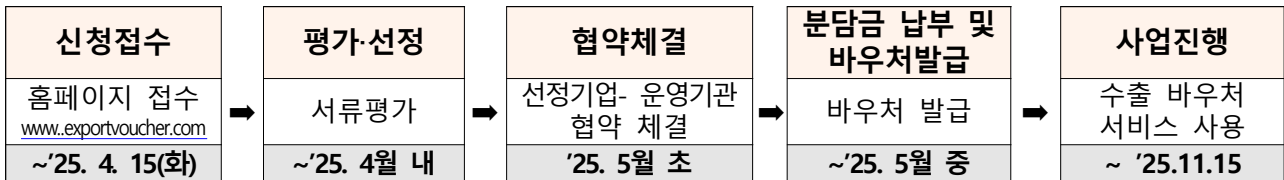
- 수출역량, 수출애로 해소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

| 평가범주 | 평가지표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량 | 재무건전성, 수출실적 등 |
| 비계량 |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애로 해소계획의 타당성 검토 |

- * 가점 우대사항은 별첨 1 참조.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 적용
- * 관세청 수출통계는 신청화면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추출되는 수출데이터 집계

□ 평가 절차

-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량/비계량(신청서) 평가 및 고점순 선정



- *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 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5. 기타 유의사항

□ 유사사업 중복지원 가능여부

- '25. 4. 1 기준 중기부 등 유관부처,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 바우처사업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은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
- 지사화사업, OK FTA 컨설팅(선택형 지원사업) : 중복선정 가능
-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수혜 불가

중앙부처, 공공기관, 지자체의 동일·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, 보조금법 및 수출바우처사업 관리지침에 의거, 보조금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* 예)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를 he기관 및 KOTRA의 해외전시팀 '단체참가 및 개별참가 지원사업'으로 환급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 신청 적발 시

□ 사업 수행 유의사항

- (기업분담금 납부) '25. 4월 이내 최대 2회 분납 가능
- 협약체결일로부터 2주 내 전체 분담금 50% 이상 납부 후 4월 이

내에 분담금 잔액 납부, 미납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* 기업분담금은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납부가 아니므로 발생이자 없음

○ (바우처 사용 의무) 바우처 사용 계획서 및 사업 협약서에 의거, “관세대응 패키지” 서비스 메뉴에 바우처 총액의 50% 이상을 미사용시 차년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참여 불이익(5점 감점)

○ (바우처 협약 중도해지) '25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

*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(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)

○ (바우처 잔액) 수출바우처 잔액 15%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

| 바우처 잔액 | 제재사항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0% 초과 |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: 참여제한 |
| 15% 초과 ~ 30% 이하 |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: 선정 시 5점 감점 |
| 15% 이하 | 제재 없음 |

* KOTRA-중진공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(바우처 잔액처리)

○ (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)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

○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(신설, 폐지 등) 될 수 있음

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內 「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을 참고하기 바라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/선정기업에게 있음

6. 문의처

| 구분 | | 전화번호 |
|-----|---|---|
| 사업 | 온라인 문의 | 홈페이지 내 '온라인 문의' 이용 * 커뮤니티>문의하기> "해당사업" 선택 후 작성 |
| | 통합안내센터 | 02 - 6004 - 8400 |
| 시스템 | 시스템 이용 관련 | 02 - 6004 - 8400 |
| |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(사업자등록·재무제표·4대보험 증빙 발급) | 02 - 3771 - 1050 |

[별첨 1] 가점 우대사항(안)

| 연번 | 가점사항 | 관리기관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| 고용노동부 |
| 2 | 산업융합 선도기업 | 산업부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(KITECH) |
| 3 |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| 산업부,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|
| 4 | 혁신조달기업 (혁신제품지정서 보유기업) | 조달청 |
| 5 | 사업재편승인기업 |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|
| 6 | CES 혁신상 수상기업 ('22~'24년) | CES |
| 7 | 해외인증 종합지원 선정기업 | 산업부 해외인증지원단, 한국표준협회 |
| 8 |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 | 산업부, 국가기술표준원(KATS)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 |
| 9 | 적합성 인증 | 산업부, 국가기술표준원(KATS), 국가산업융합센터(KNICC) |
| 10 |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업 | 관세청 |

*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화면에서 해당 우대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제출 완료하여야 가점 우대 가능
(단, 6번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불요)

* 항목별 가점 1점 적용,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은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적용